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법제처 ‘과태료 금액 지침’에 따라, 시행령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부과금액의 설정 범위를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규정의 정비

나. 안전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안전제재 수준을 법률상 상한액에 따라 비례적으로 상향정비

다.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금액 규정(별표3제2호 제러목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법제처 「과태료 금액지침」의 과태료 정비 사항, 행정안전부 「제재수준 강화를 통한 안전수칙 이행」 사항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3 제2호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별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 회 위반	2 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법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	법 제59조제1항 제1호	250	350	500
나. 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1항 제2호	250	350	500
다.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1항 제3호	250	350	500
라. 법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여객의 승선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여객명부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1항 제4호	250	350	500
마. 법 제2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발급 내역 및 여객명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1항 제5호	250	350	500
바. 법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 기재내용의 확인 또는 선적·적재 거부를 하지 않거나 발급·선적·적재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1항 제6호	250	350	500
사. 법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1호	150	200	300
아. 법 제2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게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2호	150	200	300

자. 법 제7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1조의2제1항, 제13조의제2항, 제26조제1항, 제28조제2항, 제28조제4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3항 제1호	50	70	100
차. 법 제12조제1항, 제18조 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3항 제1호	50	70	100
카. 법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3항 제1호의2	50	70	100
타. 법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승선한 경우	법 제59조제3항 제1호의3	50	70	100
파. 법 제21조의3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여객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	법 제59조제3항 제1호의4	50	70	100
하. 법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을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선적·적재한 경우	법 제59조제3항 제1호의5	50	70	100
거. 법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3항제1호의6	50	70	100
너.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일시적인 운송을 한 경우	법 제59조제3항 제2호	50	70	100
더.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3항 제3호	50	70	100
러. 법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한자	법 제59조제3항 제3호의2	50	70	100
머.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	법 제59조제3항 제3호의3	50	70	100
버. 제4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경우	법 제59조제3항 제3호의4	50	70	100
서.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	법 제59조제3항 제4호	50	70	100
어.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법 제59조제3항 제5호	50	70	100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별표3 제2호제과
호의 규정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
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
규정에 따른다. ② 이 영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
별표 3 제2호러목 및 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
함하지 아니한다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727 (044) 200 - 5738